

부속서 I의 부록 3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아래에 기재된 문안의 원산지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는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의 문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수출허가번호¹⁾ ...), 달리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 ...²⁾특혜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한다.”

.....³⁾

(장소 및 일시)

.....⁴⁾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함께 기입할 것)**

.....⁵⁾

(특기사항)

-
- 1) 원산지신고서가 제16조의 의미 내에서 등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등록수출자의 등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등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괄호안의 내용이 생략되거나, 공란으로 남겨 둔다.
 - 2) 상품의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된다(KR, IS, NO 또는 CH).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 란에 그 부호를 기재할 수 있다.
 - 3) 해당 정보가 이 서류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
 - 4) 등록수출자의 서명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서명 면제는 서명인의 성명 기재 면제도 포함한다.
 - 5) 예를 들어, 부속서 I의 부록 4 제3항에 따른 상품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부속서 I의 부록 4(영역원칙의 면제)의 규정이 적용된다”